

의안번호	2219570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계번호	26C3096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45조 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	(제4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 관할 구역의 아동 수, 아동학대 발생건수, 아동의 성별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·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·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.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·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함 (제5항) 제4항에 따른 권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46조 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	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“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”을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 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6조 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·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권고하여 시·도지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

- 현재 전국에 10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23억 6,900만원(국고보조율 50%)을 편성하고,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신규설치를 위한 12억원(국고 보조율 50%)을 별도로 편성함
 - 개정안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 설치되고,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확대 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를 권 고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알 수 없고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상 업무 확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할 지원 규모 역시 합리 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